

1997. 12.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충주시제중명동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 운영조례안	'97.12. 4	'97.12. 19	'97.12. 26	'97.12. 27	시정과장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증개정조례안	'97.12. 20	'97.12. 2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 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 치및운용조례안					사회과장
충주시제중명등수수료징 수조례증개정조례안	'97.12. 4	'97.12. 19			시민생활 지원과장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 조례증개정조례안					가정복지 과장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 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 조례안	'97.12. 20	'97.12. 22			교통행정 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충주시농촌
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도소의 설치 및 업무의 관장에 관한 사항
- 지도소장과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4.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제난 극복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기구를 감축하고 기타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구감축 : 1과 2계 1사업소

- 환경관리과 + 청소과 ⇒ 환경미화과
- 지역경제과 : 공업계 + 기업지원계 ⇒ 공업계
- 산림과 : 보호계 + 산지개발계 ⇒ 보호계
- 충열사관리사무소폐지 ⇒ 문화관광담당관실 문화재계로 업무이관

- 법령개정 관련 내용정비

- 사회단체신고에 관한법률폐지로 공보담당관실 분장사무중 '사회단체등록 및 출판에 관한사항' 삭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노동단체관련업무가 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중 '노동단체 지도육성' 삭제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 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적 운용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시 본청 569명을 553명으로 16명 감
- 직속기관 176명을 172명으로 4명 감
- 사업소 145명을 140명으로 5명 감
- 읍면동 509명을 484명으로 25명 감 등 총 50명을 감

근1.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금조성 : 충주시출연금(300백만원 이내)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

○ 기금관리

-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적립에 따른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 기금을 늘리도록 함.
- 기금관리위원회설치 :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관련 전문적 지식이 있는자 등 12명으로 구성

○ 기금의 사용

- 운용방법 : 적립예금의 이자수입 활용
- 지출용도 : 장애인 권익증진, 동북단체의 보호육성 및 사업등 지원
- 기금조성액이 300백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사용할수 없도록 함.

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민들에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 받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 확정일자 부여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지로 납부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97. 9. 1. 이후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 확정일자 부여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지로 납부토록 함.

▣ 1.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장장사용료 저렴 및 화장장려를 위한 도비보조금등의 중단으로 화장장관리 운영에 적자가 가중되고, 이러한 시설확충등의 시설투자비 확보가 곤란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유지가 되도록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화장장사용료 인상 : 충주시와 타시군 차등징구

· 현행 15세이상 및 15세미만, 개장유골, 사산오물의 요율구분을 각각 도내와 타시도로 구분 징구하던 것을 충주시, 도내타시군, 타시도로 구분 징구

■ 2.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묘지내 편의시설등의 낙후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의 문구, 용어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

- 사용자격에 있어 거주기간 기준일이 불분명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주소를 가진자'를 '사망일 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자'로 개정

△ 3.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차장법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령과 상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 효율적인 주차수요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선 설치방법 및 대상차량 명시 (제10조의 1)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 확대 (제14조)
 - 도시계획구역 →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제외시설물난 삭제 [별표2]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거리 확대 (제15조)
 - 직선거리 300m이내 →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 용어순화 (제19조)
 - 자체부자유자 (용) → 장애인 (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 1997. 1. 1일자로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으로 변경임용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농촌지도소 설치를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97. 2. 4. 개정되어
- 이에 충주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대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복잡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도 늘어가고 있으므로

- 업무를 세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주민욕구 충족을 보다 빠르게 채워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업무의 성격상 흐름에 따라 연계 추진하여야 함에도 서로 불 담처리 하다보면 업무 추진이 단절되어 주민의 욕구충족도 채워 주기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
- 그러므로 유사한 업무를 서로 묶어서 처리한다면 중도에서 단절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 이에 청소과와 환경관리과의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단속과 지역경제과의 공업계와 기업지원계의 공장유치 지원관리, 산림과의 보호계와 산지개발계의 경제성 없는 산림을 개발보호등 업무추진을 흐름에 따라 연계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충열사관리사무소의 업무는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이므로 문화재 훼손 및 도난방지 장치가 마련된다면 사업소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한 부수적으로 정원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업무진단과 기준을 정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 본청은 업무가 유사한 과와 계를 합치므로 인한 기구 축소로 잉여인력을 감축하였고
- 직속기관 보건소는 결원범위내에서 지도소는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1차 산업종사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 사업소는 5인이하 사업기구 폐지와 결원정원을 감축 하였고

○ 읍면동의 정원산출 기준은 인구수를 기준으로하여 정하였으며 단, 읍면과동의 행정특정상 차등적용 하였음.

○ 그러므로 충주시 정원은 총 1,415명에서 50명을 감축 1,365명이 총정원임.

근2.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발생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 또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수 있음.
- 충주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억원 이내의 목표로 년 3천만 원씩 10년간 적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금의 사용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록단체의 보호육성 및 사업등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다만, 기금적립금액이 3억원에 미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할수 없도록 하였음.

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를 법원에서 하던것을
- '97. 9.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 주민편익 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법원 규칙 제413호의 근거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

■).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화장장 사용료가 저렴하고 화장장려를 위한 도비 보조금지원이 중단되어 화장장 관리 운영에 적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 이로인한 시설확충등의 시설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인상을이 50%에서 100%까지 인상이 되어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금액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며
- 인근 제천시 화장장 사용료와 비교결과 비슷한 수준이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 적절한 수준까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부족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하고자 하며
- 이에 충청북도 고시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와 비교결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다하여 위반하는등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충주시의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인상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제5조 제1항중 '망인이 사망일 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문구를 수정한 것은 사망시점을 명확히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에 한해서만 사용허가를 하기 위함이며
- 제6조 제1항중 장미단지 묘지의 기당면적은 5㎡에서 10㎡로 배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전체묘지의 폐장면적이 그만큼 줄어 들고 보다빠른 만장상태를 불러 일으켜 공설묘지 확장조성등 재원투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또한 이미 만장이된 「무궁화단지 7㎡」를 「무궁화단지 8㎡」로 개정하는 것은 사용허가 당시 7㎡로 허가 하였으나 실측결과 8㎡이므로 현면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며
 -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측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됨.
 - 그 문제되는 것은 본조항 개정으로 면적을 8㎡로 확정지어 이미 만장이 된 무궁화단지내 묘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 면적의 실측을 공신력 있는 측량인지 아닌지를 현황 측량도에 의한 면적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그 이유로 재사용 허가시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사용료 및 관리비 가중 부담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수 있기 때문임.
-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위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아.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제10조의 1의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설치등 신설은 이면도로에 전용주차구획선을 정하여 주므로서 인근주민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제14조의 부설주차장설치 신설은 도시계획구역안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토 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확대 주민편의에 제공하기 위함이며

- 제15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개정내용은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기준을 확대한 것은 행정기관편의 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변화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 그에 따른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은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주차장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적용한다면 거리를 축소 조례로 정할수도 있으나 축소적용하는 것과 주차법 시행령대로 적용하는 것과 어떤 것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인지 바로 판단됨.
- 제16조 제3항, 제4항의 신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 제16조 제3항, 제4항의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의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제16조 제4항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총 주차대수는 공영주차장 전체대수의 20%이내로 제한한 것은
 - 20%인 만차가 되었을 경우 신청 양제로 인한 민원야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차면적 확보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 제20조의 음자대상자의 신설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일반인에게 음자금을 이용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내용임.
-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 이므로 상세한 질의 및 답변을 들으신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 질의 · 답변 없음.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질 의 |

- 기구축소 방안에는 동갑하나 앞으로 환경 및 청소문제에 관한 업무량이 많아지게 될것으로 보며 이에 반하여 시정과, 수자원관리과, 조경과등도 축소하거나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불.

☞ 답 변

- 한시기구 중에서 시정과, 조경과등은 현재 내무부에 조정요구 중에 있으며 '98년부터 '99년말까지 조정할 방침임.

| 질 의 |

- 청소과의 경우 쓰레기 문제와 환경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주무체는 어느계로 할것인가?

☞ 답 변

- 각 해당 국·과장동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하겠음.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질 의 |

- 50명 감축인원은 현직원을 감축하는 것인가?

☞ 답 변

- 유보정원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후속인사 조치가 있을 것임.

근).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질의)

- 장애인복지기금을 시 출연금으로 매년 3천만원씩 10년간 3억원을 적립후 적립금의 이자로 운용할 경우 목표액 적립 완료시까지는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가?

☞ 답변

- 목표액 적립 완료시까지는 국비로 지원함.

丑).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답변 없음.

寅).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답변 없음.

卯).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현재 만장된 상태에서 묘지기당 면적을 7평에서 8평로 할 경우 사용료 부과등에 따른 민원등 문제점이 없나?

☞ 답변

- 기설치된 묘지의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관리비만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음.

(질의)

- 6월이상 주소를 가진자(대상) 현황 제출바람.

☞ 답변

- 제출하겠습니다.

{ 질의 }

- 장미단지의 사용료와 관리비 인상폭이 높은데 근거나 명분이 있나?

◦ 답변

- 묘역조성 사업비, 관리인건비 등 현재 운영비 6,800만원이 적자 임.

{ 질의 }

- 사설묘지와 비교해 봤나?

◦ 답변

- 사설묘지는 1평 기준이고 공설묘지는 3평 기준이므로 사설묘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금액임.

☞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 조례 16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배치되지 않는가?

◦ 답변

-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의 규정에 맞도록 규정한 것임.

{ 질의 }

-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되는 주차대수를 주차장의 20%이내로 할 경우 문제는?

◦ 답변

- 특정장소가 아니고 충주천 복개등에 따른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봄.

{ 질의 }

- 공영주차장의 주차장설치의무 면제 차량 주차를 위한 청색선은 일반인이 사용할수 없나?

☞ 답변

- 주차장 운영시간(근무시간) 내에만 일반인 사용이 금지됨.

{ 질의 }

- 신축건축물만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나?

☞ 답변

- 신축, 용도변경 모두 해당됨.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라.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바.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 충주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야.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별 암

- 가.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
- 마. 충주시체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바.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사. 충주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야.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재배, 축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학습조직단체육성
 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등)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내지 제5호”로 하며, 같은조

제4항중 “제8호내지 제10호”를 각각 “제9호내지 제11호”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충렬사관리 운영에관한 사항

제5조제8항중 “제11호”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 안전관리지도 업무
12. 유선및 도선의 운항지도

제6조제1항중 “환경관리과”를 “환경미화과”로 하고, “청소과”를 삭제하며,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조제6항중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내지 제16호”를 각각 “제13호내지 제15호”로 한다.

③환경미화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2. 오물처리허가및 지도감독
3. 오물불법수거및 처분의 단속
4. 청소계동
5.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6. 환경영향평가및 환경분쟁조정
7. 공해업소 지도감독및 행정처분
8. 환경오염원 조사분석및 오염도 측정
9. 환경보전홍보, 계도및 교육에 관한사항
10. 배출시설설치 인허가및 배출금 과징
11.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12. 화장실개량및 정화시설검사및 개수지시
13. 오수, 분뇨, 축산폐기물등에 관한업무

제8조제8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내지 제11호”를 “제5호내지 제10호”로 한다.

부칙(1996. 4. 8 조례 제262호)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 중 “수자원관리과”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충열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자치법규의 개정) ① 충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실과명란 중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한다.

② 충주시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열사관리사무소”를 “충열사”로 한다.

[별표2] 충열사관람요금표 중 “충열사관리사무소장”을 “충주시장”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단체관람영수증 및 단체관람권란 중 “충열사관리사무소장”을 “충주시장”으로 한다.

③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주차권 중 “충주시충열사관리사무소장”을 “충주시장”으로 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569”명을 “553”명으로, 같은조 제3호중 “176”명을 “172”명으로, 같은조 제4호중 “145”명을 “140”명으로, 같은조 제5호 중 “509”명을 “48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 실천과 동법 제45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충주시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수입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기금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의 합계금액은 3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사회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단체, 기관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충주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경제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사회과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금적립금액이 300백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할 수 없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 사업의 지원
5. 장애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
6.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제
호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9.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제증명등의 수수료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증명			
가.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 통	400원	
2) 인감의 개인신고	1 통	300원	일체신고 등 제외
나.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1 통	400원	
1) 부양사실 증명			
다. 영업에 관한 증명	1 통	350원	
1) 농가, 비농가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남세필 및 등록필	1 통	400원	
2) 수출실적	1 통	400원	
3) 분배농지상환 완료	1 통	350원	
4) 공장등록 증명	1 통	400원	
5) 실수요자 증명	1 통	350원	
6) 원자재(시설세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1 통		
가) 가소요량	1 통	4,000원	
나) 확정소요량	1 통	1,500원	
7) 시설보유 증명	1 통	500원	
8)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 통	500원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1 통	800원	
마.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 통	4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 통	400원	
나) 토지도면	1 통	400원	
다) 건물도면	1 통	400원	
3) 공부열람			
가) 기본료	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4) 인 · 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50원	
바.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선 축량	1필지	5,0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	1 통	400원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 통	600원	
4) 건축부지	1필지	300원	
5)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400원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400원	
7)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400원	
8) 표준주택 설계도면	1 통	1,500원	
9) 채비지 분할신청	1 통	400원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 통	400원	
1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 획 결정 증명	1 통	300원	
사.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 통	4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 통	400원	
3) 세목별 납세증명	1 통	400원	
4) 징수유예증명	1 통	400원	
아.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 통	4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 통	400원	
3) 원천징수용 제증명	1 통	4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서	1 통	4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 통	400원	
자.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 통	4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 통	4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차. 기타증명			
1)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 통	400원	
2.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가. 일반행정관계			
1)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 건	100원	
2) 행정서사업 허가증 제교부 신청	1 건	500원	
3)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규	1 건	800원	
나) 계속	1 건	400원	
4)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1 건	800원	
5)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제교부 신청	1 건	800원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 건	600원	신 설
나.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설치 허가			
가) 가설공연장	1 건	4,000원	
나) 임시공연장	1 건	800원	
2) 공연장 양수신고	1 건	800원	
3)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가설공연장	1 건	2,500원	
나) 임시공연장	1 건	800원	
다. 보건사회관계			
1)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1 건	150원	
2) 이·미용업소 신고증 제교부	1 건	800원	
3) 공중목욕탕 신고증 제교부	1 건	800원	
4) 숙박업 신고증 제교부	1 건	800원	
5)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제교부	1 건	8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 건	800원	
7) 유기장업 허가증 제교부	1 건	800원	
8) 의료기관 개설허가			
가) 종합병원	1 건	70,000원	
나) 병원급	1 건	50,000원	
다) 의원급	1 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9)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1 건	20,000원	
10)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1 건	10,000원	
11) 유기장업 허가			
가) 컴퓨터게임장	1 건	25,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1 건	50,000원	
다) 기타유기장업	1 건	25,000원	
12) 유기장업 변경허가			
가) 컴퓨터게임장	1 건	13,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1 건	25,000원	
다) 기타유기장업	1 건	13,000원	
13) 숙박업 신고			
가) 호텔업	1 건	90,000원	
나) 콘도미니엄업	1 건	90,000원	
다) 여관업	1 건	30,000원	
라) 여인숙업	1 건	8,000원	
14) 숙박업 변경신고			
가) 호텔업	1 건	45,000원	
나) 콘도미니엄업	1 건	45,000원	
다) 여관업	1 건	15,000원	
라) 여인숙업	1 건	4,000원	
15) 목욕장업 신고			
가) 공동탕업	1 건	10,000원	
나) 가족탕업	1 건	10,000원	
다) 한증막업	1 건	10,000원	
라) 사우나탕업	1 건	50,000원	
마) 터키탕업	1 건	50,000원	
바) 복합목욕탕업	1 건	50,000원	
16) 목욕장업 변경신고			
가) 공동탕업	1 건	5,000원	
나) 가족탕업	1 건	5,000원	
다) 한증막업	1 건	5,000원	
라) 사우나탕업	1 건	25,000원	
마) 터키탕업	1 건	25,000원	
바) 복합목욕탕업	1 건	25,000원	
17) 이·미용업 신고			
가) 이용업	1 건	10,000원	
나) 미용업	1 건	10,000원	
18) 이·미용업 변경신고			
가) 이용업	1 건	5,000원	
나) 미용업	1 건	5,0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9) 위생관련업 신고			
가) 세탁업	1 건	3,500원	
나) 위생관리용역업	1 건	3,500원	
다) 위생처리업	1 건	3,500원	
20) 위생관련업 변경신고			
가) 세탁업	1 건	2,300원	
나) 위생관리용역업	1 건	2,300원	
다) 위생처리업	1 건	2,300원	
21)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가) 세척제 제조업	1 건	15,000원	
나)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1 건	3,500원	
다) 장난감 제조업	1 건	3,500원	
22)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가) 세척제 제조업	1 건	8,000원	
나)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1 건	2,300원	
다) 장난감 제조업	1 건	2,300원	
라. 농수산관계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 통	800원	
2)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 매	300원	
3) 농수산물 경매사 임면승인신청	1 건	1,500원	
4)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	1 통	500원	
마. 상공·동력자원관계			
1) 공장입지 지정승인	1 건	1,500원	
바. 건설운수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 건	1,500원	
2) 공영주택의양수·양도승인 신청	1 건	500원	
3) 공(시)영주택(증축·개축) 승인	1 건	800원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 건	800원	
5) 하천(공유수면)첨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 건	1,200원	
6) 하천(공유수면)허가 변경사항	1 건	800원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첨용허가	1 건	1,5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 건	1,500원	
9)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1 건	800원	
10) 토지사용(채비지) 승락서	1 건	800원	
11) 채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 건	800원	
12) 채비지소유권 확인원	1 건	8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 건	800원	
1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 필지 (연도별)	400원	
나) 토지대장에 기재 발급	1 필지 (연도별)	300원	
다) 열람	1필지 (연도별)	200원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장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요 울 구 分	기 준	요 액
1. 15세 이상		
가. 충 주 시 나. 도내타시군 다. 타 시 도	1 구 당 1 구 당 1 구 당	69,000 원 92,000 원 138,000 원
2. 15세 미만		
가. 충 주 시 나. 도내타시군 다. 타 시 도	1 구 당 1 구 당 1 구 당	48,000 원 64,000 원 96,000 원
3. 개장유물		
가. 충 주 시 나. 도내타시군 다. 타 시 도	1 구 당 1 구 당 1 구 당	33,000 원 44,000 원 66,000 원
4. 사산오물		
가. 충 주 시 나. 도내타시군 다. 타 시 도	1 구 당 1 구 당 1 구 당	24,000 원 32,000 원 48,000 원
5. 적출물	10 Kg	36,800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망인이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주소를 가진자"를 "망인이 사망일 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관할구역내에 6월미만 거주자"를 "망인이 사망일 기준 충주시에 6월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장미단지는 5평방미터 무궁화단지(합장의경우 한함) 7평방미터"를 "장미 단지는 10평방미터 무궁화단지(합장의경우 한함) 8평방미터"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기준 구분	합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가 산 금	비 고
10제곱미터	550,000원	250,000원	300,000원	합계금액의 30 퍼센트	관리비 : 15년간의 관리비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다음에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4항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증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등)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은 동조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의 전용주차구획은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주차 단위의 구획은 청색 실선으로 한다.
2. 전용주차구획선의 주차대상 차량은 인근 주민의 차량으로 하되,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및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 소유차량은 제외한다.
3. 전용구획의 주차요금, 정수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증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를 삭제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증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증 “법 제19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의”를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 제1항의”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준농립지역 안에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증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를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
 2. 차없는거리조성 구간내의 건물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건물 신축부지내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 ④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대 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주차 대수는 주차장 전체대수의 2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영 제2조제2항 외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을 “영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고 제9호”를 “비고 제10호”로 하고,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지체부자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 중 “지체부자유자전용”을 “장애인전용”으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용자의 대상) ①법 제21조의 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
 3.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4. 기존의 주택부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②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서의 용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용자의 방법) ①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자금의 지급절차 및 용자한도·상환기간·이율 등 용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1구획 30분기준	월 정 기 주 차	
		주 간	야 간
1 급지	500원	75,000원	56,000원
2 급지	400원	45,000원	30,000원

비 고 :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정수한다.
3. 주차요금의 정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4월 ~ 10월 : 09:00 ~ 21:00
나. 11월 ~ 3월 : 09:00 ~ 20:00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지정하되, 당해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도심, 부도심, 지하철 연계주차장 등)
5. 주차요금의 정수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주차요금은 당해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차종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 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 1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부대시설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의료시설	기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운동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관람전시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정원 15인당 1대
기타	기타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관람전시시설	운동경기판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
판매시설	시설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위탁시설 (숙 박시설에 대하여 설치 되는 위탁시 설을 제외한 다)	백화점, 쇼핑센타
	기타
기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유홍음식점
	시설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창고 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3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3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포함하되, 세대당 1대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으로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 비 고 :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중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중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 하위 끌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이 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칵테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